



원본: **영어**

번호: ICC-02/05-01/07
날짜: 2007년 4월 27일

제 I 예심원

담당: 판사 아쿠아 퀴니히아, 부장판사
판사 끌로드 요르다
판사 실비아 스타이너

사무총장: 브루노 카탈라

수단 다르푸르 사태

**아흐마드 무하메드 하룬 (“아흐마드 하룬”) 및 알리 무하메드 알리 압달라만 (“알리
쿠샤입” 기소에 관한 건**

공개문건

아흐마드 하룬에 대한 체포영장

검사실

루이스 모레노 오캄포, 검찰총장
파투 벤수다, 부장검사
앤드류 케일리, 수석검사
아데 오모파데, 검사

국제형사재판소 (“재판소”) 제 I 예심원 (“예심원”) 은;

2007 년 2 월 27 일자, 로마법전 58 조 7 항에 근거한 검찰측의 아흐마드 하룬과 알리 쿠샤입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(“검찰측 신청”) 및 검찰측이 제출한 증거들과 그밖의 정보들을 검토하였으며;¹

예심원은 로마법전 제 58 조 7 항²에 근거한 결정에서, 아흐마드 하룬의 출두에 대한 소환장이 그의 법정출두를 보장하는데에 충분치 않으며, 로마법전 (“법전”) 제 58 조 1 항(b)에 의거 그의 체포가 필요함을 고려하였다;

이에 법전 제 19 조와 58 조를 참조하여;

검찰측에서 제출된 증거와 정보에 근거, 법전 제 19 조 2 항(a)와 (b)에 따른 재판 관할권에 대한 이의제기 및 그에 따른 판단과는 하등의 관련없이, 아흐마드 하룬과 알리 쿠샤입에 대한 기소는 재판소의 사법관할권에 해당이 됨을 고려하고;

2002 년 8 월부터 적어도 검찰측 체포영장신청에 관련된때까지, 수단 육군, Popular Defence Force (“PDF”), 잔자위드 민병대쪽과 수단해방군 및 정의와 평등전선 (戰線)쪽의 사이에서, 법전 제 8 조 2 항(f)에 해당되는 지속적 무장분쟁이 발생했으며;

수단 육군과 잔자위드 민병대가 반군진압 작업의 일환으로 코둠, 빈디시, 무크자르, 아라왈라와 그 주변 지역을 2003 년과 2004 년에 이르는 장기간동안 다수의 공격을 가했으나, 이 마을들은 반군활동이 전혀 없었고, 민간인들은 반군활동에 전혀 참가하지 않았다고 볼 정당한 근거들이 발견되었고;

¹ ICC-02/05-62-US-Exp; ICC-02/05-64-US-Exp; ICC-02/05-69-US-Exp; and ICC-02/05-72-US-Exp.

² ICC-02/05-01/07-1.

수단 육군과 잔자위드 민병대가 이 공격들을 가하는 과정인 2003 년 8 월에서 2004 년의 3 월까지의 기간동안, 특히 퍼, 자가와, 마살리트 지역에서 민간인 살해, 강간,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유린, 민간인들에 대한 의도적 공격 및 위 지역민 소유의 재산에 대한 파괴등의 범죄행위들을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으며;

위 공격을 가하는 과정에서, 법전 제 8 조 (2)항(c)(i), 제 8 조 (2)항(c)(ii), 제 8 조 (2)항(e)(i), 제 8 조 (2)항 (e)(v), 제 8 조 (2)항(e)(vi), 및 제 8 조 (2)항(e)(xii)에 해당되는, 재판소의 재판관할권에 해당되는 전쟁범죄들이, 검찰측의 체포영장 신청서에 있듯이, 일어났다고 볼 정당한 근거들이 있고;

수단육군과 잔자위드 민병대에 의한 공격들은 체계적이거나 광범위하게 자행되었으며, 주로 퍼, 자가와, 마살리트 지역의 민간인들에게,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을 구성하는 국가적 혹은 조직적 정책의 추진에 따라 행해져왔다고 볼 정당한 근거가 있으며;

이 공격들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주로 퍼, 자가와, 마살리트 지역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처형, 살인, 강제이주, 감금 및 강제 구금, 고문, 강간과 기타 다른 비인간적 행동들을 수단 육군 및 잔자위드 민병대가 저질렀다는 정당한 근거가 있고;

위 공격을 가하는 과정에서, 법전 제 7 조 (1)항(a), 제 7 조 (1)항(d), 제 7 조 (1)항(e), 제 7 조 (1)항(f), 제 7 조 (1)항(g), 제 7 조 (1)항(h) 및 제 7 조 (1)항(k)에 해당되는, 재판소의 재판관할권에 해당되는 반인륜범죄들이, 검찰측의 체포영장신청서에 있듯이, 일어났다고 볼 정당한 근거들이 있고;

아흐마드 하룬은 2003 년 4 월 무렵부터 2005 년 6 월 무렵까지 수단정부의 내무부장관을 지냈으며, 그동안 다르푸르 안보 위원회의 책임을 맡아 반정부군 진압에 관련된 정부기관들, 즉 경찰, 육군, 국가 정보기관 및 잔자위드 민병대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고;

아흐마드 하룬은 다르푸르 안보위원회의 자신의 직책을 통해서, 그리고 그의 조직내 전반적 조율활동 및 안보위원회의 주요 활동에의 개인적 참여활동들, 즉 병사모집 및

다르푸르내의 잔자위드 민병대의 무장과 금전지원들을 통해서, 수단 육군 및 잔자위드 민병대에 의한 민간인 공격활동들이 그의 참여로 심화된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정당한 근거들이 있고;

아흐마드 하룬은, 위에 언급된 범죄들이 민간인들에게 자행되는 점 및 잔자위드 민병대가 이 범죄들에 사용한 방법들을 그의 지위를 통해서 인지하고 있었으며, 공공연설을 통해 잔자위드 민병대가 민간인들을 공격하고 마을들을 약탈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, 되려 이런 불법 행동들을 개인적으로 장려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으며;

위의 이유들에 근거, 아흐마드 하룬은 법전 제 25 조 (3)항(b) 및 제 25 조 (3)항(d)에 명시된 반인륜 범죄와 전쟁범죄에 대하여, 검찰측 체포영장신청에 나타난대로 다음의 공소사실(公訴事實)들에 대한 형사책임이 있다고 볼 정당한 근거가 있다:

공소사실 1

(코둠부락 및 주변지역에서의 처형은 반인륜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년 8월 15일 무렵부터 2003년 8월 31일경까지 코둠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계(係) 주민들에 대한 처형과 민간인 공격, 재산파괴 및 강제이주에 기여함 (법전 제 7 조(1)항(h) 및 제 25 조(3)항(d));

공소사실 2

(코둠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 살해는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년 8월 15일 무렵부터 코둠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계(係) 민간인들에 대한 살인에 기여함 (법전 제 7 조(1)항(a) 및 제 25 조(3)항(d));

공소사실 3

(코둠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 살해는 전쟁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년 8월 15일 무렵부터 코둠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반군활동과 무관한 퍼계(係) 민간인들에 대한 살인에 기여함 (법전 제 8 조(2)항(c)(i) 및 제 25 조(3)항(d));

공소사실 4

(코둠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 살해는 반인륜적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년 8월 31일 무렵부터 코둠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계(係) 민간인들에 대한 살인에 기여함 (법전 제 7 조(1)항(a) 및 제 25 조(3)항(d));

공소사실 5

(코둠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 살해는 전쟁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년 8월 31일 무렵부터 코둠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반군활동과 무관한 퍼계(係) 민간인들에 대한 살인에 기여함 (법전 제 8 조(2)항(c)(i) 및 제 25 조(3)항(d));

공소사실 6

(코둠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전쟁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년 8월 15일 무렵부터 2003년 8월 31일경까지, 코둠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계(係) 민간인들과 반군활동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에 기여함 (법전 제 8 조(2)항(e)(i) 및 제 25 조(3)항(d));

공소사실 8

(코둠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재산파괴는 전쟁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년 8월 15일 무렵부터 2003년 8월 31일경까지, 코둠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계(係) 민간인들에게 속한 재산의 파괴 및 그 주거지의 방화에 기여함 (법전 제 8 조(2)항(e)(xii) 및 제 25 조(3)항(d));

공소사실 9

(코둠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강제이주는 반인륜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년 8월 15일 무렵부터 2003년 8월 31일경까지, 코둠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약 20,000 명에

달하는 퍼계(係) 민간인들의 강제이주 및 그로인한 마을의 황폐화에 기여함 (법전 제 7 조(1)항(d) 및 제 25 조(3)항(d));

공소사실 10

(빈디시부락 및 주변지역에서의 처형은 반인륜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년 8월 15일 무렵부터 빈디시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계(係) 주민들에 대한 처형에 기여함에 있어서 살인, 강간, 민간인공격, 비인간적 행동, 약탈, 재산파괴 및 강제이주를 자행함 (법전 제 7 조(1)항(h) 및 제 25 조(3)항(d));

공소사실 11

(빈디시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 살해는 반인륜적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년 8월 15일 무렵부터 빈디시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100여명 이상의 퍼계(係) 민간인들에 대한 살인에 기여함 (법전 제 7 조(1)항(a) 및 제 25 조(3)항(d));

공소사실 12

(빈디시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 살해는 전쟁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년 8월 15일 무렵부터 빈디시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반군활동과 무관한 100여명 이상의 퍼계(係) 민간인들에 대한 살인에 기여함 (법전 제 8 조(2)항(c)(i) 및 제 25 조(3)항(d));

공소사실 13

(빈디시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강간은 반인륜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년 8월 15일 무렵부터 빈디시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계(係) 부녀자들과 소녀들에 대한 강간에 협조함 (법전 제 7 조(1)항(g) 및 제 25 조(3)항(d));

공소사실 14

(빈디시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강간은 전쟁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년 8월 15일 무렵부터 빈디시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계(係) 부녀자들과 소녀들에 대한 강간에 협조함 (법전 제 8 조(2)항(e)(vi) 및 제 25 조(3)항(d));

공소사실 15

(빈디시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전쟁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년 8월 15일 무렵부터 2003년 8월 31일경까지, 빈디시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계(係) 민간인들과 반군활동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에 기여함 (법전 제 8 조(2)항(e)(i) 및 제 25 조(3)항(d));

공소사실 17

(빈디시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비인간적 활동은 반인륜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년 8월 15일 무렵부터, 빈디시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계(係) 민간인들에 대한 끔찍한 고문 및 비인간적 활동들로 인한 육체적, 정신적 중(重)상해, 비인간적 충격으로 발생한 증상들을 초래하는데 기여함 (법전 제 7 조(1)항(k) 및 제 25 조(3)항(d));

공소사실 18

(빈디시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약탈은 전쟁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년 8월 15일 무렵부터, 빈디시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계(係) 민간인들 소유의 가재(家財)를 포함한 재산을 약탈함에 기여함 (법전 제 8 조(2)항(e)(v) 및 제 25 조(3)항(d));

공소사실 19

(빈디시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재산의 파괴는 전쟁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년 8월 15일 무렵부터, 빈디시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계(係) 인구들 소유의 음식창고, 사원과 거주공간에 대한 방화를 포함한 재산의 파괴에 기여함 (법전 제 8 조(2)항(e)(xii) 및 제 25 조(3)항(d));

공소사실 20

(빈디시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강제이주는 반인륜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년 8월 15일 무렵부터, 빈디시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약 34,000명에 달하는 퍼계(係) 민간인들의 강제이주 및 그로인한 마을의 황폐화에 기여함(법전 제 7 조(1)항(d) 및 제 25 조(3)항(d));

공소사실 21

(무크자르 부락 및 주변지역에서의 처형은 반인륜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년 8월부터 2004년 3월 사이에 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계(係) 주민들에 대한 처형에 기여함에 있어서 살인, 민간인공격, 감금 및 자유권의 심각한 박탈, 고문, 약탈, 및 재산파괴를 자행함 (법전 제 7 조(1)항(h) 및 제 25 조(3)항(d));

공소사실 22

(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 살해는 반인륜적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년 9월부터 2003년 10월 사이에 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, 적어도 20명 이상의 퍼계(係) 민간인들에 대한 살인에 기여함 (법전 제 7 조(1)항(a) 및 제 25 조(3)항(d));

공소사실 23

(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 살해는 전쟁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년 9월부터 2003년 10월 사이에 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, 특히 반군활동과 무관한 적어도 20명 이상의 퍼계(係) 민간인들에 대한 살인에 기여함 (법전 제 8 조(2)항(c)(i) 및 제 25 조(3)항(d));

공소사실 24

(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 살해는 반인륜적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년 12월 무렵 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, 적어도 21명 이상의 피해(係) 민간인들에 대한 살인에 기여함 (법전 제 7 조(1)항(a) 및 제 25 조(3)항(d));

공소사실 26

(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 살해는 전쟁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년 12월 무렵 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, 특히 반군활동과 무관한 적어도 20명 이상의 피해(係) 민간인들에 대한 살인에 기여함 (법전 제 8 조(2)항(c)(i) 및 제 25 조(3)항(d));

공소사실 28

(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 살해는 반인륜적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4년 3월 무렵 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, 적어도 32명 이상의 피해(係) 민간인들에 대한 살인에 기여함 (법전 제 7 조(1)항(a) 및 제 25 조(3)항(d));

공소사실 30

(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 살해는 전쟁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4년 3월 무렵 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, 특히 반군활동과 무관한 적어도 32명 이상의 피해(係) 민간인들에 대한 살인에 기여함 (법전 제 8 조(2)항(c)(i) 및 제 25 조(3)항(d));

공소사실 32

(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전쟁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년 8월부터 2004년 3월 사이에, 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피해(係) 민간인들과 반군활동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에 기여함 (법전 제 8 조(2)항(e)(i) 및 제 25 조(3)항(d));

공소사실 34

(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감금 및 자유권의 심각한 박탈은 반인륜적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년 8월경부터 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, 특히 최소한 400명 이상의 피계(係) 민간인들의 감금 및 신체자유권의 심각한 박탈에 기여함 (법전 제 7 조(1)항(e) 및 제 25 조(3)항(d));

공소사실 35

(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고문은 반인륜적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년 8월경부터 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, 특히 최소 60명 이상의 피계(係) 민간인들의 고문에 기여함 (법전 제 7 조(1)항(f) 및 제 25 조(3)항(d));

공소사실 36

(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약탈은 전쟁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년 8월부터 2004년 3월 사이에 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피계(係) 민간인들 소유의 상점, 주거지 및 가축등을 포함한 재산을 약탈하는데 기여함 (법전 제 8 조(2)항(e)(v) 및 제 25 조(3)항(d));

공소사실 37

(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약탈은 전쟁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년 8월 3일 무렵부터 2004년 8월 10일 사이에 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피계(係) 민간인들 소유의 상점, 주거지 및 가축등을 포함한 재산 약탈을 유도함 (법전 제 8 조(2)항(c)(v) 및 제 25 조(3)항(b));

공소사실 38

(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재산의 파괴는 전쟁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8 월부터 2004 년 3 월사이에, 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계(係) 인구들 소유의 거주지에 대한 방화 및 곡식과 농장등의 재산 파괴에 기여함 (법전 제 8 조(2)항(e)(xii) 및 제 25 조(3)항(d));

공소사실 39

(아라왈라 부락 및 주변지역에서의 처형은 반인륜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12 월 무렵 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계(係) 주민들에 대한 처형에 기여함에 있어서 살인, 강간, 민간인공격, 존엄권에 대한 유린, 비인간적 활동, 약탈, 재산파괴 및 강제이주를 자행함 (법전 제 7 조(1)항(h) 및 제 25 조(3)항(d));

공소사실 40

(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 살해는 반인륜적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12 월 무렵부터 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에서, 적어도 26 명 이상의 퍼계(係) 민간인들에 대한 살인에 기여함 (법전 제 7 조(1)항(a) 및 제 25 조(3)항(d));

공소사실 41

(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 살해는 전쟁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12 월 무렵부터 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의 반군활동과 무관한 적어도 26 명 이상의, 특히 퍼계(係) 민간인들에 대한 살인에 기여함 (법전 제 8 조(2)항(c)(i) 및 제 25 조(3)항(d));

공소사실 42

(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강간은 반인륜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12 월 무렵부터 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에서 특히 적어도 10 명 이상의 퍼계(係) 부녀자들과 소녀들에 대한 강간에 기여함 (법전 제 7 조(1)항(g) 및 제 25 조(3)항(d));

공소사실 43

(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강간은 전쟁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12 월 무렵부터 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에서 특히 적어도 10 명 이상의 퍼계(係) 부녀자들과 소녀들에 대한 강간에 협조함 (법전 제 8 조(2)항(e)(vi) 및 제 25 조(3)항(d));

공소사실 44

(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전쟁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12 월 무렵부터, 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계(係) 민간인들과 반군활동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에 기여함 (법전 제 8 조(2)항(e)(i) 및 제 25 조(3)항(d));

공소사실 46

(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존엄권에 대한 유린은 전쟁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12 월 무렵부터, 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의 적어도 10 명 이상의, 특히 퍼계(係) 부녀자들과 소녀들의 존엄권을 유린하는데 기여함 (법전 제 8 조(2)항(c)(ii) 및 제 25 조(3)항(d));

공소사실 48

(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비인간적 활동은 반인륜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12 월 무렵부터, 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계(係) 민간인들에 대한 끔찍한 고문 및 비인간적 활동들로 인한 육체적, 정신적 중(重)상해들을 초래하는데 기여함 (법전 제 7 조(1)항(k) 및 제 25 조(3)항(d));

공소사실 49

(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약탈은 전쟁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12 월 무렵부터, 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계(係) 민간인들 소유의 상점, 가옥 및 가축을 포함한 재산을 약탈함에 기여함 (법전 제 8 조(2)항(e)(v) 및 제 25 조(3)항(d));

공소사실 50

(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재산의 파괴는 전쟁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12 월 무렵부터, 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계(係) 인구들 소유의 재산을 포함한 아라왈라 부락을 대부분 파괴하는데 기여함 (법전 제 8 조(2)항(e)(xii) 및 제 25 조(3)항(d));

공소사실 51

(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강제이주는 반인륜범죄에 해당)

아흐마드 하룬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12 월 무렵부터, 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약 7,000 명에 달하는 퍼계(係) 민간인들의 텔레이그, 가르실라 및 그외의 지역으로의 강제이주 및 그로 인한 마을의 황폐화에 기여함 (법전 제 7 조(1)항(d) 및 제 25 조(3)항(d));

아흐마드 하룬의 수단 정부내에서의 전·현직 직위를 고려하고, 법전 제 58 조 (1)항 (b)(i) 및 (ii)에 비추어볼 때, 이시점에서 그의 체포는 그의 법정출두 및 수사방해를 막기위해 필요한것으로 여겨지므로;

이상의 이유들에 근거하여,

다음과 같이 발부한다:

아흐마드 무하메드 하룬에 대한 체포영장: 1964 년경 출생; 수단 국적으로 알려져있으며, 북(北) 코르도판주 바르고우라 불리는 부족의 일원; 2003 년 4 월경부터 2005 년 9 월경까지 수단의 내무부장관을 역임했고, 2006 년부터는 현

수단정부에서 인권을 다루는 내무부장관직을 역임하고 있음; 이름은 아흐메드 하로운, 모하메드 아메드 하로운 및 아메드 하룬등으로 표기되기도 함.³

영문 및 불문으로 작성되었으며, 영문판에 권위가 있음.

판사 아쿠아 쿠니히아
부장판사

판사 골로드 요르다

판사 실비아 스타이너

2007 년 4 월 27 일 금요일
네덜란드 헤이그

³ 영문표기 원본 참조.